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 5월 31일
○ 회부일자 : 2020년  6월  1일

## 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(대통령령)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○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
○ 「공직선거법」, 「주민투표법」 등에 따른 투·개표 사무원 등 선거 및 투표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

## 4. 주요내용

○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3조)
○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실시 규정 개정(안 제14조제4항)
○ 「공직선거법」, 「주민투표법」 등에 따른 각종 선거 및 투표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9항)

## 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가보상비 및 특별휴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3조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- 안 제14조4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,
-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주민투표법」 등에 따른 각종 선거 및 투표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○ 이 조례는 연가보상비 및 각종 선거 및 투표 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, 장기재직 휴가에 5년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5일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